

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의3서식] <개정 2018.09. 27.>

##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수임인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위임인과의 관계
	주 소	

위임인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
	주 소	

위임인은 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「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.

년       월       일

1991 위임인

(자필서명)

- ※ 비고 :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.  
 ※ 의무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.  
 대리인이 본 서식을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 할 경우 형법 제 231조 사문서 위조죄 및 형법 제 234조 동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.